

## 인천항 통관·물류 정상화를 위한

#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 제재(안)

( '22. 4. 19. 회, 인천본부세관)

### □ 추진 배경

- 인천항 통관·물류 정상화를 위한 **세관장 명령의 집행력 확보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** 위하여, **납세의무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 (제공)한 신고인(관세사),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**

#### < 추진 경과 >

- ▶ [세관장명령] 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 **세관장명령 제1호('21.3.), 제2호\*('21.12.)**
  - \*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정보(상호,성명,주소,전화번호,이메일)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
- ▶ [지속홍보] 관내 관세사에 **세관장명령 준수 철저 안내** 공문 2회 발송('22.2', '22.4)
  - \* 화주고객의 정보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 등을 정정할 것

### □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 제재(안)

#### ○ [적용대상]

- ①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인천세관(020, 040)에 수입신고한 건
- ② 평택항, 군산항 등으로 반입하여 인천세관으로 보세운송 후 인천세관(020, 040)에 수입신고한 건

#### ○ [적용항목] 상호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, 이메일

※ 「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」 별지제1-2호(수입신고서작성요령)에 따른 필수 기재항목

#### ○ [제재기준] 신고인(관세사)에 적용

구분(신고월) 오류건수/月	4월 ~ 5월	6월 ~ 8월	9월 ~
1건 ~ 29건	계도(공문)	계도(공문)+수입신고서정정	처벌(징계의뢰) + 수입신고서정정
30건 이상		처벌(징계의뢰)+수입신고서정정	

- (오류건수) 수입신고건을 기준(납세의무자 기준 아님)으로 하며, 1건의 수입신고서에 2개 항목 이상의 정보가 잘못 신고된 경우에도 이를 1건으로 계산함
- (귀책사유) 납세의무자 정보 정정 시 귀책사유는 원칙'신고인'으로 하되, 신고인의 사실 확인 요청에도 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예외'화주 등'으로 함
  - ※ 「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제5호(기타) 적용 안됨

### ○ [적용예외]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제재

- 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부터 수입신고를 의뢰받은 신고인(관세사)이 납세의무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진실성에 의문이 있어
- 수입신고 전에 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, 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\*를 제공한 경우
  - \* <사례>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창고, 논·밭·나대지 등 본인의 소유 또는 임차관계 등이 없는 주소지, 본인 또는 가족 이외의 제3자 명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,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주소 등
- 신고인(관세사)는 면책\*하고,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제재

※ 신고인 면책은 ①신고인이 화주고객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동 제재(안)을 안내하고, ②수입신고 전에 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납세의무자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요청한 객관적 증빙자료(이메일 등)이 있는 경우에 한함

## □ 시행일

- 2022년 6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